

# 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

## ■ 특별공급 자격요건

-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·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, 아래조건(①~⑤)을 모두 갖춘 자
- 자격요건
  -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(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,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)
  -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(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부금, 청약예금)이 1순위를 충족하는 자.  
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
•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• 세대주일 것 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
  -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(재혼 포함)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입양을 포함하며,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)가 있는 자
  -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신청한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
- 「소득세법」 제19조(사업소득) 또는 제20조(근로소득)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,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·세액공제·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.  
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"0"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(세) 사실 증명도 함께 제출.
  -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(공급신청자 및 세대에 속한 세대원[성년인 자(만 19세 이상)] 전원의 소득을 포함)이 [\*표]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% 이한인 자.  
※ 가구원수 :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.

## 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세대수

구분	74A	74B	84A	84B	합계
생애최초 주택구입자특별공급 우선공급(70%) / 일반공급(30%)	2 / 1	2 / 1	14 / 6	2 / 1	20 / 9

## 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기준 및 선정 방법

소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준 : 160% 이하</li> <li>•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대구광역시) 거주자에 우선 / 단, 동일 지역내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</li> </ul>
선정방법	<아래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> 소득 → 거주지역 → 추첨 1. 공급세대수의 100%를 소득기준 배분(소수점 이하 절상) 2. 경쟁이 있는 경우 1) 해당 지역 거주자(대구광역시)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(대구광역시) 거주자 우선 배분 2) 동일지역 거주자 내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배분

## 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소득기준

공급유형	구분	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					
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
생애최초 우선공급 (기준소득, 70%)	130%이하	7,839,208원	9,222,467원	9,222,467원	9,777,362원	10,332,258원	10,887,154원
생애최초 일반공급 (상위소득, 30%)	160%이하	7,839,209원~ 9,648,256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222,468원~ 11,350,728원	9,777,363원~ 12,033,677원	10,332,259원~ 12,716,626원	10,887,155원~ 13,399,574원

- ※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→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+ [1인당 평균소득(426,843) \* (N-8), 100% 기준] ※ N → 9인 이상 가구원수
- ※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(만 19세 이상)의 합산 소득입대단, 세대원의 실종·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).
- ※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÷ 근무월수를 말하며,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(21년)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,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,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,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※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,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)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.

## 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

해당여부	소득입증 제출서류		발급처
생애최초 특별공급	자격 입증서류	근로자 -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자영업자 -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,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-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	* 해당직장 * 세무서
	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(근로자, 자영업자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) -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 부자)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(원천징수영수증)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	* 세무서 * 해당직장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'입주자모집공고일'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